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시행에 따라 용어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규칙으로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대상자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1조, 제2조)

- 당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
- 변경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

나. 보험료 지급대상자의 지원중단·환수규정을 조례로 규정
(안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겪고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 월 10,000원미만”을 “기준 월 10,000원”으로, “세대”를 “미만 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족 가구

제3조제4호 중 “가정세대”를 “가정”으로, “세대원이”를 “가구원이”로, “세대원이 군복무중 이거나”를 “가구원이 군 복무 중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세대”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세대”를 “가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산상황”을 “자산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15일전”을 “1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겪고 있는 사람</u> ----- ----- ----- ----- - <u>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
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
과금액 기준 월 10,000원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
대

2. 등록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 (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
무중 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
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
호 및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
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
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생 략)

제3조(지원대상) -----

----- 기준 월 10,000원 미만
가구--.

1. -----
가구

2. 등록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족 가구

4. ----- 가정
----- 가구원
이 ----- 가구원이 군 복
무 중이거나 -----

5. -----

----- 에 따른 -----
----- 가구

6. -----
----- 가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의 자산상 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①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의 자료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 자산
상황 -----.

③ ----- 제2항에 따라

-----.

제5조(지원금액) -----
----- 범위-----
-----.

제7조(보험료의 지급) ----- 제4
조-----

--.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
----- 지원대상자 -----
----- 15일 전-----
-----.

② ----- 제1항-----

-----.

제9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 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 하여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 에 ----- -----.
---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

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실·과		주민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배 정 미
	담 당	신 형 수
	담 당 자	김 은 희 (480-5133)